

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대학생의 학과성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이장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장학금의 선발 및 심의기간도 매학기 개시전까지로 앞당겨 이장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평점 4.5점 만점에 “3.0점 이상인 자”를 “2.5점 이상인 자”로 개정 (안 제2조)
- 매학기 개시 후 2월이내”를 “매학기 개시 이전까지”로 개정 (안 제4조)
- “1월 이내에”를 “15일 이내에”로 개정 (안 제7조)
- 제8조제1항제3호 삭제

3.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- 예산 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 예고 : 2009. 2. 9 ~ 2009. 3. 4(23일간)
의견없음
- 산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3.0점 이상인 자”를 “2.5점 이상인 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매 학기 개시후 2월이내”를 “매학기 개시 이전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월 이내”를 “1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】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현재 이 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야 한다.</p> <p>1.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“미” 이상이 전체과목의 50% 이상이 거나,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고,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.5점 만점에 <u>3.0점</u> <u>이상인 자.</u></p>	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.5점</u> <u>이상인 자.</u></p>
<p>제4조(선발 및 심의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군수는 읍·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<u>매 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</u> 확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선발 및 심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 ---- 명단확정 후 <u>1월 이내에</u> 군수는 읍,면장을 통해 지급한다.</p>	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----- ----- <u>15일 이내에</u> ---- -----.</p>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<u>3.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,</u> <u>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</u></p> <p>4. ~ 5. (생 략)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 삭 제 ></u>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■ 지방자치법

제23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